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5
----------	-----

발의연월일 : 2019년 3월 14일

발의자 : 김용석, 김상훈, 박순규,
이상훈, 신정호, 이정인,
송아람, 김정환, 추승우,
장상기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반려식물을 보급하여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반려식물 보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반려식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u></p>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